

제 2399호
2015. 10. 1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집인: 공 보 실 장 장 운 기
전화: 3396-496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 관 의 장
람	

구 보

- 교 시
- 제2015-80호 :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
- 제2015-81호 :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
- 제2015-82호 :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 4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
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80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90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산당동 394-6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90	2010.06.28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1~5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10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81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60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60	2015.10.14.	건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10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 2015-82호

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

건설부고시 제317호(1983.9.3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시 고시 제414호 (2011.12.29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서울시 중구 고시 제2013-66호(2013.7.17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7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하고, 같은법 제4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

1)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변 경	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	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	4,088.8	증)50.4	4,139.2	·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및 정비기반시설 추가 부담

다. 정비계획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	4,088.8	증)50.4	4,139.2	100.0	
정비 기반 시설	소계	1,129.6	증)18.1	1,147.7	27.7	
	도로	54.9	감)2.2	52.7	1.2	·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(감2.2㎡)
	공원	1,074.7	증)20.3	1,095.0	26.5	·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(감9.9㎡) 및 정비기반시설 추가부담(증30.2㎡)
택지 (지구)	소 계	2,959.2	증)32.3	2,991.5	72.3	
	4지구	2,959.2	증)32.3	2,991.5	72.3	·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

2)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가) 도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기 점	종 점			
기정	소로	1	1	1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92	을지로2가동 179-3	을지로2가동 168-22	-	'84.4.27	
기정	소로	1	2	10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25	을지로2가동 168-21	저동 67-4	-	'84.4.27	
기정	소로	1	3	10~16	집산 도로	일반 도로	101	을지로2가동 168-9	저동 103-9	-	'84.4.27	
신설	소로	3	186	3.7~6.0	특수 도로	지하 도로	97 (36)	저동1가 48 (저동1가 48)	을지로2가 147-2 (저동1가 48)	-	'15.7.9	(정비구 역내)

나) 도시계획시설(도로:지하도로) 입체적 결정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입체적 결정규모	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연장(m)	폭원(m)	높이(m)	면적		
신설	도로	지하 도로	저동1가 4 8일대	33.0	3.7~5.2	24.1~30.0 (해수면기준)	157.5	'15.7.9	

다) 녹지(변경없음)

결정 구분	명칭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녹지	연결녹지	을지로2가 192-2일대	306.0	-	306.0	변경없음

라) 문화공원

결정 구분	명칭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공원	문화공원	저동 90-10 일대	2,117.0	감)9.9	2,107.1	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

마)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

- 명동구역 제4지구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

구 분	구역명	시행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(㎡)	대지내 공공용지(㎡)	부담률(%)
기 정	명동구역 제4지구	4,088.8	2,959.2	1,129.6	122.1	25.40
변 경	명동구역 제4지구	4,139.2	2,991.5	1,147.7	122.1	25.53

- 정비기반시설 추가 부담면적(관리청으로 무상귀속)

구역명	위 치	시설종류	정비기반시설 추가 부담면적(㎡)	비 고
명동구역 제4지구	저동1가 90-11	공원	30.2	· 측량성과에 따른 정비기반 시설 감소로 시행자 추가부담

4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연면적 (㎡)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(m) 층수(층)
	명 칭	면 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	
기정	명동구역 4지구	2,959.2	-	-	저동1가 48번지 일대	54,000 이하	업무시설 (금융업소)	60 이하	1,200 이하	120m이하 지상25층 /지하7층
변경	명동구역 4지구	2,991.5	-	-	-	-	-	-	-	120m이하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해 당 없 음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변 경 없 음							

5)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없음)

6) 기타정비계획사항(변경없음)

2. 변경사유

- 명동구역 제4지구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추가 부담계획에 따른 변 경 및 중구
고시 제2015-49호(2015.7.9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지하도로)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
사항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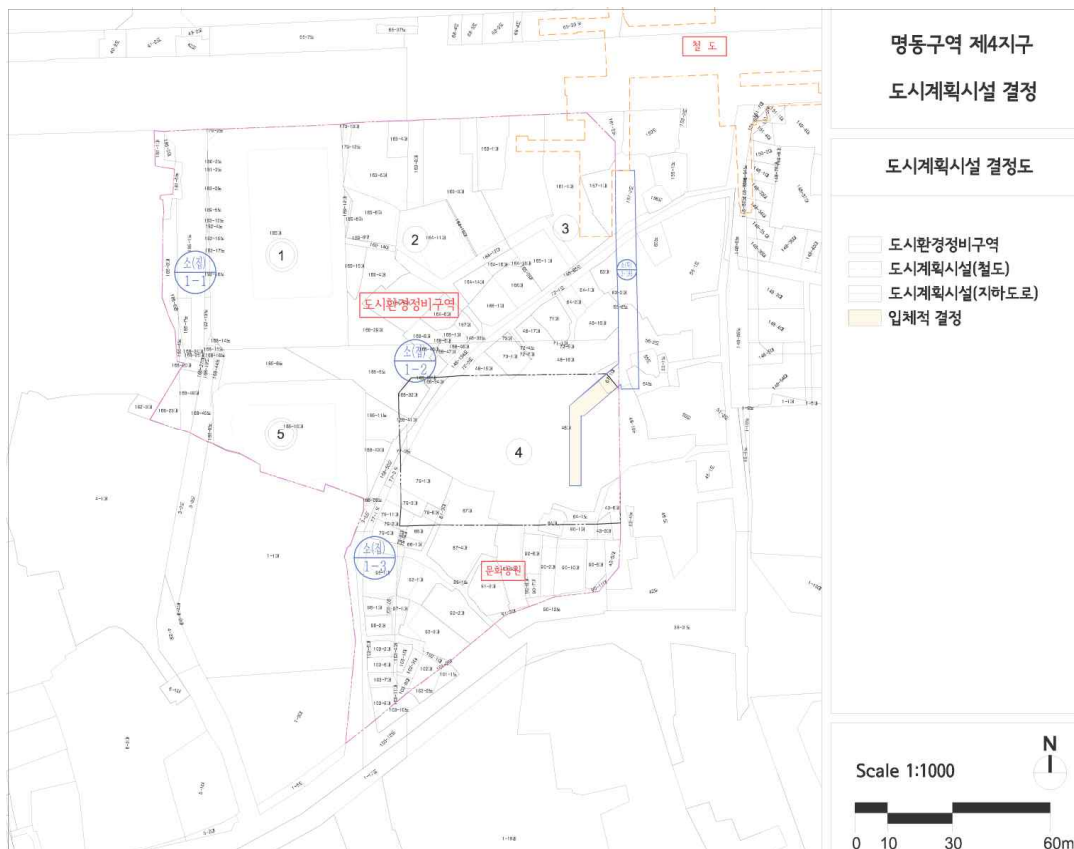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

- 정비구역 결정도 및 정비기본시설 결정도
 -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도서 참조

4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심재생과(☎3396-5786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

■ 정비기반시설 결정도

